
고려 '進上制'의 내용과 성격의 변화

이 정 란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머리말

I. 진상의 종류와 내용

II. 예헌적 선물로서 진상의 특성

III. 고려후기 私膳의 확대와 封餘·羨餘

IV. 진상제와 선물경제의 상관성

맺음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7117)
- 투고일: 2019. 2. 28. ● 심사일: 2019. 2. 28. ● 게재확정일: 2019. 3. 12.
- <https://doi.org/10.31218/TRKH.2019.03.133.219>

www.kci.go.kr

요약

조선에서 진상은 봉상하는 물품에 따라 物膳進上·方物進上·祭享進上 등으로 나뉘는데, 고려에도 조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려의 자료에서 자주 나오는 진상은 물선과 방물의 진상이다. 물선진상이란 임금의 식생활 재료를 바치는 진상을 의미하는데, 고려에서는 정기적인 물선의 진상인 常膳은 물론 비정기적인 진상인 別膳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방물진상이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으로, 거기에는 名日進上和 講武進上 등이 있다. 특히 고려에서 명일진상은 臣子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의무였다.

한편, 고려왕조는 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는 의례의 일환이었던 진상의 본래적 함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에서 진상은 황제의 영역적 지배를 확인시키는 상징적 의례로서의 의미를 지녔는데, 고려의 진상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었다. 즉, 고려의 각종 賀禮儀에는 諸州縣에서 진상물을 바치는 절차만을 규율해 두었을 뿐 京官의 그것을 삼입해두지 않았는데, 이는 진상물의 상납의례가 임금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을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의례였음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조치였다. 또한 고려에서는 진상품으로서 상납되는 물품이 소량이었는데, 이것 역시 의례성이 강하였을 뿐 실용적인 목적이 없었던 진상의 본래적 의미를 살린 조치였다.

그런데 의례적인 예물이었던 진상이 唐代에 이르러 사적인 선물로 변질되어 갔던 중국의 역사는 고려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임금의 총애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진상하는 私膳이 고려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것이다. 사선은 관인층의 욕망에서만 비롯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의 임금이 사선을 부추긴 측면이 컸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왕실재정의 악화가 자리하였다.

사선의 성행에 따른 진상제의 확대는 선물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전근대 사회에서 관료들 사이에 다양한 물품을 주고받던 시스템인 선물 체제는 사실 封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고려에서 조선조까지 크게 성행했다. 봉여를 수수하던 선물경제의 관행은 당대 지배층들이 지녔던 治者意識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민으로부터 공물의 상납을 받아야 하는 치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무 거리낌 없이 봉여를 자기들끼리 관행적으로 주고받았던 것이다.

주제어 : 진상, 선물경제, 物膳, 常膳, 別膳, 私膳, 名日進上, 朝賀儀, 治者意識, 封餘, 예헌적 선물

머리말

고려의 ‘進上’은 諸道の 관원들이 공물의 일부를 국왕과 그 일족에게 바치는 일로 흔히 이해되어 왔다. 즉, 고려에서는 貢賦의 일종으로 국왕에게 상납되는 토산물을 膳이라 불렀으며, 膳을 빙자한 別膳이나 私膳이 고려후기에 성행하였다¹⁾는 정도가 고려에서 공물의 일부를 임금에게 바치는 제도를 다룬 그 동안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상납되는 物目이 대개 지방의 土宜였다는 점에서 貢賦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진상은 본래 공물의 상납과는 별차원의 제도였다.²⁾ 공부가 토산물을 중앙에 상납하는 부세제도의 일환이었다면 진상은 임금에게 선물을 바치는 의례의 일종이었다. 역사적 연원상 진상제는 지방의 관리가 禮物로써 土産物을 국왕에게 봉진하는 관행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다.³⁾

사실 예물로서 임금에게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역사는 유래가 오래 되었다. 『서경』 禹貢에 이미 「任土作貢」이란 어휘와 함께 다양한 물목의 貢이 규정되었고, 後漢代에는 남해의 여러 군에서 진상된 과일을 太廟의 제사에 사용하였다. 또 隋代에 이르면 年初에 지방장관들이 朝集使를 파견하여 元日朝會에 공물을 바치게 했다고 한다.⁴⁾ 그런데 이러한 예물로서의 진상이 변질되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당대였다. 흔히 進奉으

1) 姜晉哲, 1980, 『高麗土地制度史研究』, 고려대 출판부, 271쪽.

2)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228~230쪽.

진상욱, 2011, 「호서대동법 실시 전후 진상의 운영과 변화」, 『중앙사론』 34, 189쪽.
최주희, 2012, 「15~16세기 別進上의 상납과 운영 - 강원·경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46, 10쪽.

3) 조선에서 진상은 “예헌적 선물이자 공적 과세”로서의 중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왕실제정 개혁구상」, 『역사와 담론』 65, 34쪽), 그 제도적 연원을 보면 진상의 본래 모습은 임금에게 바치는 예물에 가까웠다.

4) 大津透, 2006,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 岩波書店, 182쪽.

로 불렸던 중국의 진상제는 당말의 중앙재정 궁핍과 함께 크게 성행했다. 자립할거하고 있던 절도사들이 중앙에 납입하고 남은 공물[羨餘]을 황제에게 사적으로 상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 황제들은 진봉을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인식하고 금지했다. 하지만 계속된 세입의 축소와 국가재정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의 악화 및 황제의 사치생활로 인해 진봉은 당말에 날로 확대되었다.⁵⁾ 이러한 진봉의 유행은 당시의 재정체계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당시 財務는 수입과 지출의 세부까지 분명히 규정하는 量出制入의 원칙에 의거한 元額制[또는 定額制]에 의해 운영되었다. 수지의 기준액을 고정하여 수지균형을 꾀하는 재무운영이었기 때문에, 원액제는 자연히 정액 이상의 잉여를 발생시켰다. 지방관들은 지출하고 남은 回收錢物이나 정액 이상 징수된 羨餘錢物들을 留使錢·留州錢으로 전용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을 진봉의 재원으로 삼았던 것이다.⁶⁾

이렇게 진봉된 재물들은 황제 전용의 財庫인 內庫에 수장되어 제실재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다시 말해 당말 진봉의 성행은 제실재정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중국에 가서는 帝室의 私藏庫가 예비금고로서의 공공성을 획득하여 국가재정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했다.⁷⁾

이상에서 예물에서 시작하여 왕실재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중국에서의 진상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미 말했지만, 고려 진상제에 대한 연구는 공물과의 관계만을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왕실재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5) 中村裕一, 1971, 「唐代 內藏庫の變容 - 進奉を中心に -」, 『待兼山論叢』 4, 大阪大學文學部.

6) 渡邊信一郎, 2013, 「定額制の成立 - 唐代後半期における財務運營の轉換 -」,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9, 462~467쪽.

7) 梅原郁, 1971, 「宋代の內藏と左藏-君主獨裁制の財庫」, 『東洋學報』 42; 中村裕一, 1971, 앞의 논문.

이에 본고에서는 그 동안 공납제의 일환으로만 연구되어 왔던 고려 ‘진상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려 왕실제정과 상관계를 간략히 추적해보고, 마지막으로 양반관료들끼리 여분의 공물을 선물로 교환하는 ‘膳物經濟’⁸⁾의 형성에서 드러나는 당대 지배층의 인식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진상제’⁹⁾라는 이름으로 다루려는 내용은 예물의 일환으로 임금에게 지방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제도와 그것의 변용형태로 고려후기에 성행한 私膳 등이며, 국왕 및 왕실

8) 선물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

李成姪, 2005,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53~54쪽 및 77~79쪽.

9) 전근대에서 공물의 일부를 임금에게 상납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는 다양하다. 즉, 進獻·進奉·供上·上供 등이 그와 같은 의미로서 史書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상납 대상에 따라 위의 어휘들을 구별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어, 上國에 공물을 바칠 때는 進獻을, 임금과 왕비에게는 進上을, 왕실의 다른 성원들에게는 供上을 주로 사용했다. 사실 조선 초기에는 “국왕 및 왕실가족의 일상생활과 권위유지에 필요한 여러 물산을 공급·조달하는 일”로 흔히 供上을 사용했는데, 세종이 재위 7년에 국왕·왕비에 대해서는 進上을, 나머지 各殿에 대해서는 供上이라고 부르도록 함으로써(『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신유조), 진상이란 어휘가 왕실제정과 관련하여 조선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에 비해 고려에서는 위와 같은 유별적 용법이 없었다. 즉, 고려에서는 임금에게 물산을 바치는 행위로서, 進獻·進奉·供上·上供 등이 혼용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흔히 사용된 어휘는 進奉이었는데, 문제는 진봉이 進獻과 함께 上國에 방물을 바치는 행위로서 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 공상이나 상공 역시 고려에서 임금에게 공물의 일부를 상납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임금에게 한정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임금과 왕비 이외에 다양한 왕실 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供上田과 같이 공물이나 예물의 상납을 뜻하는 용어로 보기 어려운 용법도 보인다. 즉, 고려에서 공상·상공은 예물의 의미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산을 임금 및 다양한 왕실 성원들에게 공급·조달하는 제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상이 조선에서 境內의 신민들이 예현적 선물로서 공물의 일부를 임금에게 상납하는 제도로 흔히 호칭되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고려의 관련 제도를 일단 ‘진상’으로 부르겠다. 이상에서 살핀 어휘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

이정란, 2019, 「고려후기의 供上制와 왕실제정의 상관성에 대한 試論」, 『한국중세사연구』 56.

가족의 일상생활과 권위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공급하는 일로서 고려후기의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공상·상공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I. 진상의 종류와 내용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진상은 봉상하는 물품에 따라 物膳進上·方物進上·祭享進上·藥材進上·鷹子進上 등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사료에 빈출하는 것이 물선과 방물의 진상이다. 物膳·膳物·常膳·別膳·私膳 등의 造語로 흔히 기술되는 膳은 음식재료를 뜻하므로, 물선진상이란 말 그대로 임금과 그 일족들의 식생활 재료를 봉납한 진상을 의미한다. 물선진상 중 常膳이 정기적인 진상을 의미한다면 別膳·別進上物膳·別饌 등은 부정기적인 물선의 진상을 뜻한다. 상선에는 진봉시기에 따라 朔膳·月膳·望膳 등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 別進膳으로도 불렸던 별선에는 왕명으로 지방에 파견된 奉使者 및 지방관으로 새로 부임하는 관리가 到界의 날에 바치는 道界進上和 遞任되는 날 사은의 의미로 바치는 瓜遞進上 등이 있다. 방물진상이란 각 지역의 특산물인 方物을 임금에게 봉상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節日·名節·祝日 등에 행하는 名日進上和 강무를 행할 때 올리는 講武進上 등이 있다.¹⁰⁾

앞 장에서 살핀 바처럼 진상은 역사적으로 예헌적 선물에서 기원하여 나중에는 임금과 사적 은총관계를 맺으려는 관원들의 욕망과 뒤섞여 변용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제반 규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웠다. 즉, 지방관들은 管下의 공물들을 때로는 관례에 의거하여

10) 田川孝三, 1964, 「進上考」,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91~217쪽.

때로는 임의대로 진상하곤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진상에 대한 상세한 상납절차를 처음 마련한 시기가 세종대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종은 역마의 번잡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당시 각도에서의 진상 시기·물목·수량 및 도수를 정하도록 하여, 각도 관찰사 및 각 병마·수군절제사 등 총 22 문무장관 중 13관은 매월 望前과 望後에, 6관은 매월 1회, 2관은 격월로 1회 진상하도록 하였다.¹¹⁾

그러나 사실 진상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한 것은 고려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常膳·別膳·朔膳·名日進上等 진상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휘들을 『고려사』에서 익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상선과 별선

물선진상과 관련하여 고려의 자료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상선·별선·사선 등이다. 상선이 정기적인 물선이라면 별선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상납한 물선을 의미하며, 사선은 물선진상을 빙자하여 권귀들에게 사적으로 선물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관련 자료를 보자.

가) <충렬왕 11년 3월> 신묘에 教旨를 내려 이르기를, “(상략) 每月의 常膳과 別膳을 바칠 때 飢餓한 백성들[殘民]로부터 과도하게 거두어들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라.”라고 하였다.¹²⁾

고려 후기의 기사이지만 가)에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물선

11) 『세종실록』 권6 세종 원년 12월 신묘조.

田川孝三, 1964, 위의 책, 94쪽.

12) “辛卯 下旨 (중략) 一 每月常膳及別膳進供時 重歛殘民 以爲私用 痛行禁止(『고려사』 권30 충렬왕 11년 3월).

진상에는 상선과 별선의 구분이 있으며 상선 중에는 매달 봉상되는 月膳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뒤에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朔膳은 물론 별선으로서 도계진상도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런데 가)에서 별선은 말할 것도 없고 상선을 통해서도 외관들이 많은 폐단을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징수되었던 관계로 별선이 가렴주구의 수단으로 애용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별선보다 상선이 백성들에게 보다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품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며 매월·계절별·연도별로 상납되는 수많은 종류의 물선들이 대개 상선을 통해 정규적으로 꾸준히 진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선 중에서도 당시 고려의 백성을 힘들게 한 물선은 각종 야생 동물에 대한 진상이었다.

나-1) 조준이 또 상서하기를, “(중략) 州郡에서는 朔膳과 使客 접대 등의 일로 인하여 한창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농민들을 강제로 모아서 가시덤불 속으로 몰고 다니면서 열흘이나 한 달 동안 사냥을 시킵니다. 농사란 그 시기를 잃으면 민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정이 이와 같으므로 만약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이라면 우리[牢]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민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경기에 닭과 돼지를 기르는 場 두 곳을 만들어, 하나는 典廐署가 맡아서 종묘의 제사에 쓰이게 하고, 다른 하나는 司宰寺에서 맡아서 궁궐 주방과 賓客의 용도로 공급하게 하시옵소서. 주군의 각 역에서도 모두 가축을 기르도록 명하여 잘 기르도록 하고 새끼와 알을 해치지 않는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供上·제사·빈객 접대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사는 용도로도 족하고, 사냥 때문에 농

사를 망치는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³⁾

나-2) <明宗> 18년(1188) 3월 制하기를, “(상략) 무릇 임금에게 바치는 物膳(供御物膳)은 각각의 토산품에 따라 곧바로 바치도록 하며, 그 외에 애호품인 곰·호랑이·표범의 가죽 같은 것은 民을 수고롭게 하면서 거두어 은밀하게 바치고 있는데[密進] 이러한 것을 못하게 하고, 또 驛路를 이용하여 私門에 선물을 운송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¹⁴⁾

물선진상은 대개 해당 물품을 직접 중앙에 상납하는 체제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布帛 등으로 대납되기도 했다. 그에 비해 사슴·토끼·노루 등의 야생 동물은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당시 외관들은 朔膳이나 使客의 접대 등을 이유로 농민들을 사냥에 동원하여 수십 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貢役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失農하게 했다고 나-1)은 전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조준은 典廐署와 司宰寺에서 가축을 기르게 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지방관들이 농민들을 사냥으로 내몰았던 것은 단순히 육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나-2)의 기사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지방관들이 임금의 애호품인 곰이나 호랑이, 표범의 가죽을 상납하였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것의 명목으로 供御物膳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貢役으로밖에 조달할 방법이 없는 각종 짐승의 가죽이 임금에게 바치는 물선에 포함되었

13) “又上疏曰(중략) 州郡因朔膳使客供支等事 雖當盛農 驅集農民 馳聘荆棘 旬月弋獵 農失其時 民不足食 職此之由 若夫鷄豚之畜 則取之牢中 不擾於民 願自今 京畿築鷄豚場二所 一令典廐署主之 以奉宗廟祭祀之用 一令司宰寺主之 以供御庖賓客之須 至於州郡各驛 皆令畜之 樽節愛養 不害胎卵 則不出數年 而供上祭祀賓客之奉 充吾民養生之用足 而無弋獵廢農之患矣”(『고려사』 권118 열전31 趙浚傳).

14) “十八年三月 制曰(중략) 凡供御物膳 各因土宜 隨卽進獻 其餘玩好熊虎豹皮 無以勞民徵取密進 又無以驛路贈送私門”(『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禁令).

다는 것은, 그것의 진상과정에서 백성들이 입었던 피해의 정도를 짐작 가능케 한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가)와 나) 사료에서 진상을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가 주목된다. 가)에서 충렬왕은 지방관들의 진상물 私用 행위와 함께 常膳과 別膳을 殘民에게 重歛하는 작폐를 엄금하였다. 사실 두 가지 폐단은 상호 연관되어 있었다. 잔민에게 과세함으로써 수세의 불균등을 야기하였고 또 과도한 '중렴'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기 선여물의 발생은 지방관들의 私用을 유도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이란 중앙에 상납해야 할 물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함을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2)의 密進이나 뒤에서 살펴볼 私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검토해보겠다.

2. 방물진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물진상에는 명일과 강무의 진상이 있다. 고려에서 명일진상이 정규적으로 행해졌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렬왕 때 외적의 노략을 당한 交州道에 대해 팔관회·원정·동지의 進奉을 면제한 기록이 있다.¹⁵⁾ 이는 팔관회·원정·동지 등의 節日에 진상이 정규적으로 행해졌던 사실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외관들에게 있어 진상이 臣子로서 거역할 수 없는 의무였음도 말해준다. 즉, '진봉'을 면한다는 특별한 왕명이 하달된 사실에서 그와 같은 특명이 없다면 해당 절일에 진상을 해야만 했던 당대의 관행을 간취할 수 있다.

명일진상의 의무화는 上表의 관행과 연계해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

15) “丙申 以交州道經賊剽掠 民物凋殘 停諸郡八關·正·至進奉”(『고려사』 권30 世家 30 忠烈王 18年 10월).

다. 사실 해당 절일에 외관들은 진봉뿐만 아니라 表文도 아울러 관례적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당시 외관들은 賀表의 상정을 사실상 강제받고 있었다.¹⁶⁾ 팔관회에 하표를 올리지 않은 수령들을 탄핵하지 않았다가 도리어 피핵된 이규보의 사례¹⁷⁾나 고종 40년의 팔관회 축일에 전쟁으로 인해 남경·광주·수주 3곳에서만 상표했다는 일화 등¹⁸⁾에서 강제성이 확인된다. 절일에 상표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제되었던 까닭에 전쟁의 와중에도 신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신님의 소유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도 왕의 칙명을 받아야만 면제될 수 있는 신자로서의 의무였다고 할 수 있다. 특명의 전제 없이는 상표를 면제받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승휴의 사례이다. 이승휴는 원종 6년 11월에 冬至와 八關의 표문을 갖고 上京하면서 元正의 賀表만은 왕의 칙명에 따라 상표하지 않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데,¹⁹⁾ 이로 보아 명일에 표문을 바치지 않으려면 임금의 특명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표는 의례 진상을 동반했으므로, 명일진상 역시 신자의 의무였다고 하겠다.

명일진상의 상례화는 『고려사』 예지에 관련 의례가 수록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元正·冬至·節日에 임금이 신하들의 조하를 받는 의례인 元正冬至節日朝賀儀가 정리되어 있는데, 거행 예식 중에 諸道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進奉物의 내역을 정리한 物狀을 바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戶部尙書가 외방의 奉表員이 가져온

16) 고려의 각종 의례에서 표문이 상표되는 의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 바란다. 이정란, 「고려 전기 上表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제3회 전국대 왕권탐 학술발표회 발표문.

17) 『東國李相國集』 東國李相國集年譜.

18)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0년 11월조.

19) “十一月初吉 奉冬至八關兩表[皆居第二 元正則勅除賀表] 如京 馬上記憶去年奉表時 行字韻 用寄本府諸桂仙云”(『動安居士集』 行錄 2).

물장의 목록을 궁궐 뜰 중앙에서 바치면 閣門이 그것을 접수하여 임금에게 바친다고 한다.²⁰⁾ 이처럼 조하의에 진상품과 물장을 상납하는 절차가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名日에 진상품을 상납하는 일이 반드시 거행되어야 하는 의례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명일진상의 이러한 의무화는 고려에서 도계진상이 시행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지방관에 임명된 자들에게 명일이나 到界의 날에 謝狀을 올리고 예물을 진상하도록 했던 조선의 관례²¹⁾로 비추어 보건대, 명일진상을 의무화하였던 고려에서도 도계진상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도계진상의 시행을 유추하게 하는 기사가 『고려사』에 전한다.

다) (충렬왕 5년 7월) 을묘에 각도의 안렴·수령이 정월과 동지의 賀狀과 到界狀을 올리는 것을 면제해주었다.²²⁾

위의 기록에 따르면, 충렬왕이 외관들이 관례적으로 올렸던 정월과 동지의 하장²³⁾을 면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하장과 함께 도계장도 면제한 것으로 보아, 도계장의 상정도 본래 외관의 의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도계장의 상정이 이처럼 의무였다면 그와 함께 의례히 병행되던 예물의 진헌도 행해졌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고려조에서도 도계진상이 관례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정규의 날짜에 거행되는 진상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거행되는 祝日에도 명일진상이 이루어졌다. 예종 3년에 임금이 모후를 태후로 책봉

20) 『고려사』 권67 지21 예9 元正冬至節日朝賀儀.

21) 田川孝三, 1964, 앞의 책, 115쪽.

22) “乙卯 除各道按廉守令賀正至及到界狀”(『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5년 7월).

23) 고려에서는 본래 동지와 정월에 임금에게 하표를 올렸는데, 충렬왕 2년에 원에 의해 왕실 용어가 격하되면서 하표도 하장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의례를 거행한 후, 진봉물을 바친 여러 주·군·현의 進奉長吏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거나²⁴⁾ 동정직 등을 加職한 사례로 보건대, 태후를 책봉하는 축일에도 진봉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또한 儀鳳門宣赦書儀에 진봉물을 꺾박에 진열하는 예식이 기술된 사실²⁶⁾에서 임금의 사면령 반포에도 외방에서 진봉물이 상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일 진상 중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것들도 있었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라-1) 갑신 百官이 왕의 생일을 축하하며 각각 다과를 바쳤는데, 典儀寺는 바치지 못하였으며 書雲觀은 배 한 그릇만 바쳤다. 이에 典儀兼官 李彦忠과 書雲提點 崔誠之에게 모두 은 1근을 징수하였다.²⁷⁾

라-2) 생신날에 예물을 바쳐 올리고, 府를 세워 宮臣을 비치하여라. 內職은 예로부터 중하거니와, 삼한은 이제부터 새로워지리, 많고 많은 건 儒館의 서책이요, 연달은 것은 御廚의 진미로세, 백발에 병까지 많은 이 사람이, 광영이 못사람에 뛰어나구나.²⁸⁾

라-1)에 따르면 충선왕의 생일을 맞아 많은 백관들이 다과를 바쳤는데, 전의시와 서운관이 제대로 예물을 바치지 않아 해당 관사의 관원이 벌로 은 1근을 징수당했다고 한다. 임금의 생일에 외방은 물론 중앙의 각사와 관리들도 진상을 했던 것이다. 왕비의 생일에도 진상이 행해졌는데, 라-2)가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라-2)는 우왕 5년 12월에 「宰樞進手

24)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흥 恩免之制 예종 3년.

25)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 2월 신묘조.

26) 『고려사』 권68 지22 禮10 가례 儀鳳門宣赦書儀

27) “甲申 百官賀王誕日 各獻茶果 典儀寺不及 書雲觀梨一器而已 典儀兼官李彦忠書雲提點崔誠之 並徵銀一斤”(『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9월).

28) “生辰呈手帕 立府備宮臣 內職由來重 三韓自此新 紛披儒館冊 絡繹御廚珍 白髮仍多病 光榮出衆人”(『牧隱詩藁』 권21 十二日 謹妃生辰 宰樞進手帕別贈 既罷 與權左使奉教撰定府名 日晚未上).

帕別膳 既罷 與權左使奉教撰定府名 日晚未上」라는 긴 題下로 작성된 이색의 시이다. 우왕의 1비인 謹妃의 생일인 12월 12일에 宰樞들이 예물[手帕]로서 별선을 올리고 난 뒤, 이색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府名을 撰定하다가 날이 저물어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하의 내용이다.

요컨대, 고려에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식생활 재료를 봉상하는 物膳進上和 지방의 특산물을 봉납하는 方物進上 등이 있었다. 물선진상에는 정규적으로 거행되는 常膳은 물론 비정기적인 진상인 別膳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방물진상에는 名日進上 등이 있었다. 팔관회·원정·동지 등의 名日은 물론 각종 祝日에 거행되는 진상은 그것을 면제하는 임금의 명령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신자로서의 의무였고, 그로 인해 왕조 내내 임금에 대한 예물의 상납이 정규적으로 거행되었다.

II. 예헌적 선물로서 진상의 특성

앞 장에서 살핀 ㄹ)의 기록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축일에 중앙의 관원과 관사가 물선을 임금에게 바쳤다는 사실이다. 팔관·동지·절일조하의를 다룬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하의의 거행 중에 京官들이 물선을 진상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⁹⁾ 즉, 해당 의례에서 중앙의 관원들은 구두로 경하를 올릴 뿐 諸道에서 파견한 관리의 사례처럼 진상품을 올리는 의례를 별도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京官들이 적어도 공적인 의례공간에서는 물선을 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ㄹ)에 의거한다면, 임금이나

29) 이정란, 2018, 앞의 논문.

왕비의 탄일에 지방과 중앙 관원의 구분 없이 모두 진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충선왕의 탄일에 백관들이 예물을 바쳤고 우왕의 근비 생일에는 재추들이 별선을 바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탄신일의 경우에만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모든 관료들이 임금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관·동지·절일조하의』에 삽입된 節日에는 임금의 탄일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임금의 탄신일에 열리는 조하의에서도 京官들은 구두로만 경하를 올릴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라)에 제시된 사례로 보건대, 경관들도 임금과 왕비에게 예물을 바쳤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경관들은 아마도 조하의와 같은 공식 의례식이 거행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별도의 시간에 예물을 바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하의에 경관의 예물진봉 의식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唐의 元日朝會에서 진상품을 궐에 진열하였던 것이 황제의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다고 파악한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⁰⁾ 황제의 영역적 지배를 확인시키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만큼, 여러 군현에서의 진봉물을 올리는 절차는 물론 기미주와 피책봉국에서 조공품을 바치는 절차까지도 해당 의례에 비교적 세세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에 반해 경관들이 예물을 바치는 의식은 굳이 따로 마련할 까닭이 없었다.³¹⁾ 고려의 조하의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었다. 조하의에 諸郡縣이나 여진·탐라 등의 ‘諸蕃’에서 진상하는 절차는 세밀하게 규정하여 두었지만 중앙의 관원들이 예물을 바치는 의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30) 大津透, 2006, 앞의 책, 184쪽; 大隅清陽, 2011, 『律令官制と禮秩序の研究』, 吉川弘文館, 203쪽.

31) “당나라 朝賀儀禮의 중심부분은 ① 上公에 의한 奏賀, ② 中書省에 의한 諸州鎮表의 奏上, ③ 黃門侍郎에 의한 祥瑞의 奏上, ④ 戶部尙書에 의한 諸州貢物의 奏上, ⑤ 禮部尙書에 의한 諸蕃貢物의 奏上 등”이라고 한다(大隅清陽, 2011, 위의 책, 203쪽).

라)에서 두 번째로 관심을 끄는 사안은 진상의 명목인데도 상납한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라-1)에 따르면, 탄신 축하예물을 아예 바치지 못한 典儀寺는 말할 필요도 없고 書雲觀의 경우 겨우 배 한 그릇만 바쳤다. 당시는 前王의 자격으로 원에 오래 체류한 끝에 고국에서 다시 고려왕의 지위에 오른 충선왕의 첫 탄일이었는데도 두 기관의 진상품이 그와 같이 형편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양 기관의 주장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 사례에서 미루어 보건대 다른 기관들에서 바쳤을 예물의 양도 그리 많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進上이 본래 국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던 역사적 사실에 다시 유의해야겠다. 예물로서의 의미가 컸던 만큼, 정성을 표하는 수준이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당에서도 지방의 주현에서 봉진한 특산물은 소량에 불과했다고 한다. 당시 주현에서 상납된 土宜는 의례성이 강했던 만큼 “의례적으로 式場에 진열되었을 뿐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런 까닭에 상납된 물량이 소량이었다고 한다.³²⁾

이상에서 살핀 내용으로 보건대, 고려왕조는 임금에 대한 예현적 선물이라는 진상의 본래적 함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상을 예물의 봉진으로 바라보았던 고려인의 모습은 아래의 자료에서 더욱 잘 간취된다.

마) 上王(忠宣王 : 필자 註)이 자신의 德 10여 조를 스스로 기록하여 式目都監에 몰래 내려 보내서 箋을 올려 하례하도록 하였다. 그 箋에서

32) 漢代 이전에는 예물로서의 진상을 의미하는 ‘貢獻’이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재정적인 의의도 있었으나 당대에 이르면 재정적 의미는 크게 사라졌다고 한다(大津透, 2006, 앞의 책, 182~184쪽). 한편, 당의 현종대에 이르면 황제에게 개인적 은혜를 얻기 위한 ‘자발적 진헌’이 巨額化하여 ‘진봉’이 황실재정의 주요 토대가 되었다(中村裕一, 1971, 앞의 논문; 清木場東, 1997, 『帝賜の構造 - 唐代財政史研究 支出編』, 中國書店, 417쪽).

이르기를, “(상략) 요즈음 廉恥가 행해지지 않고 탐욕과 잔인함이 일어나 예전에 內府에 바쳤던 것을 모두 私門에 함부로 들이니, 경비를 담당하는 자들은 곤경에 처하여 다른 집에서 이자돈(息利)을 빌려도 오히려 모자랍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진실로 사내아이를 주고 곡식으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곧 모두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까닭으로 節日이나 설날에 進獻하는 재물과 조정의 재상들이나 사신들에게 지급해주는 여비조차 감히 징발하게 되었는데, 안으로는 문무백관에게, 밖으로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물목도> 배와 은에서 곰과 범의 가죽에 이르기까지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반 정도는 內姦들에게 떨어지고, 또는 北으로 올려 보내는 도중에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쉽게 바꾸어 利用厚生하시고자 말씀하시기를, ‘쌀은 곧 흉년에 대비하기 위함이니 창고를 설치하여 有備倉이라 이름 짓고, 鹽稅는 옛 사람들이 시행해오던 것이니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도 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쌓아놓은 곡식이 어찌 3년 치에 그치겠나이까. (중략) 博愛를 仁이라고 부르는데 <전하께서는> 부지런하고 또 검소하셔서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朔膳을 줄여주시고 단 하루도 잔치를 열거나 놀러가지 않으셨으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략)” 라고 하였다.³³⁾

마)는 충선왕이 자신의 덕을 칭송한 自撰의 글을 식목도감에 내린 뒤에 글을 지어 올리도록 한 箋文의 일부이다. 그 중에 공물과 관련된 당대

33) “甲辰 上王自記其德十餘條 密下式目 令上箋陳賀 箋曰 (중략) 頃者 廉恥不行 貪殘斯作 舊所貢於內府 皆擅入於私門 管當時經費者孔艱 貸他家息錢而猶乏 苟不持男而易粟 卽皆祝髮以投山 是以 節日正旦 進獻之資 朝宰使臣 贈遺之驢 敢以徵發 出自差抽 內焉文武庶官 外則貧窮百姓 斂以布銀之物 及諸熊虎之皮 然或半落於內姦 又將北上而中廢 思艱圖易 利用厚生 以謂粒米乃儉歲之有備 設倉爲名 塩稅是古人之通行 斂民無弊 蘇醒已遍於庶類 蓄積何止於三年 (중략) 博愛之謂仁 克勤而又儉 減諸郡之朔膳 無一日之宴遊 凡曰含靈 舉欣有喜”(『고려사』 권34 忠肅王 원년 1월 갑진).

의 현실이 기재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기존에 內府에 상납되었던 물품들이 私門으로 들어가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節日이나 正月에 진헌하는 재물 및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감히 징발하는’[敢以徵發] 폐단이 당시에 발생했음을 언급한 문구가 있다. 문맥을 있는 그대로 보면, 위에 제시된 두 가지 경비는 세금으로 거두지 말아야 하는 비목이다. 재상이나 사신들의 國驢 비용은 일반 경상비로서 국고에서 지급되어야 할 국용이므로, 그것의 지급 명목으로 별도로 과세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본래 성립될 수 없다. 문제는 절일이나 정월에 진헌하는 물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데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윈 간섭기’였던 당대의 정황은 물론 ‘물산의 北上’을 云云했던 문구로 보아 마)에서 절일이나 정월에 진헌을 받는 대상은 윈 황제라고 하겠다. 고려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진헌 비용은 ‘외교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으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파악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진헌이 본래 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는 제도에서 유래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고려 경내에서 임금에게 봉진하는 일뿐만 아니라 상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일도 모두 예물을 진헌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마)에서처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통용되었던 것이다.³⁴⁾ 이런 점에서 각관에서 직접 준비하여 바치는 후대 조선의 官備貢物과 같은 것이 본래 진정한 의미의 진상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고려에서는 예헌적 선물로서 진상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

34)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조선에서도 진상은 예헌적 선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의례로 인식되었다. 그로 인해 일반군현과 중앙 각사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반 공물과는 다른 수취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진상의 경우, 일반군현의 토산물을 중앙각사나 임금에게 바치는 과정에서 지방장관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해당 지방장관이 임금에게 진상품을 예물로서 바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전상욱, 2011, 앞의 논문, 189쪽).

습을 다방면에서 잘 구현하고 있었다. 元正冬至節日朝賀儀에 諸州縣과 ‘諸藩’이 진상품을 바치는 절차를 상세히 규율해둠으로써, 고려 국왕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을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의례로서의 모습이 의례의 거행 중에 충실히 재현되도록 했고, 물산을 소량 상납토록 함으로써 의례성이 강하였던 진상의 본래 취지가 그대로 준수되도록 했다. 이처럼 진상을 예현적 예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인들은 진상을 핑계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Ⅲ. 고려후기 私膳의 확대와 封餘·羨餘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의례적인 예물로서의 의미가 컸던 진봉은 당대에 이르러 恩倖을 얻으려는 변진과 관찰사의 욕망으로 인해 사적인 선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후 황실재정의 중요한 물질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기원상 임금에게 헌납하는 ‘예물’이었던 관계로, 진상 그 자체는 처음부터 공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었다.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금으로부터 총행을 얻기 위해 많은 관료들은 사적으로 진상을 하곤 했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바-1) 이전에 김준의 아들인 承宣 金皜의 家奴가 龍山別監 李碩에게 원한이 있었다. 그는 이석이 궁중에 쓸 음식[內膳]을 실은 배 2척을 강에다 정박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애에게 이석을 고자질하였다. 김애가 김준에게 이를 알리니, <김준은> 夜別抄를 파견하여 그 음식을 빼앗아서 자신의 집으로 들여놓은 뒤 야별초에게 나누어주었다. 조금 있다가 김준이 왕을 알현하니, 왕은 이석이 임금에게 올린 膳狀을 김준에게 보여주었다. 김준은 안색이 변하고, 물러나와 음식을 도

로 거두어서 바치니 왕이 그것을 물리치면서 “이미 빼앗고서 다시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들은 모두 寡人이 제사와 醮祭에 사용할 것인데, 이석이 오래 지체하고 바치지 않아서 김준에게 빼앗긴 것이니 이것은 이석의 죄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석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드디어 內侍 權仁紀로 대체하였다가 얼마 뒤에 이석을 소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왕이 김준을 더욱 미워하였다.³⁵⁾

바-2) 경인 洛浪君 金璵이 왕을 초대하여 男山書齋에서 잔치를 열었다. 이에 宰樞와 僧徒들이 날마다 進膳을 하며 사치가 극에 달하였다.³⁶⁾

바-1)은 김애가 私感 때문에 임금에게 올린 內膳을 아버지 김준을 조종해 탈취한 사건을 전하는 기사이다. 내선을 빼앗긴 원종은 祭醮에 쓸 진상품이었다고 말했으나, 김준의 행동을 보면 그것은 私膳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무인집정이라고 하지만 임금에게 바칠 내선을 탈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야별초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선으로 보아야만 김준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김준은 이석의 내선을 비법적인 진상으로 여겨 별다른 거리낌이 없이 내선을 탈취했고, 또 본래 국고에 들어가야 했을 재화라고 생각했기에 야별초에게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파악해야만 자신에게 상납되는 진상을 빼앗은 김준을 처벌하는 대신 도리어 강탈당한 이석을 문책한 원종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시각에서 보면, 바-1)에 내선으로 기술된 진상은 사선이었다고

35) “初俊子承宣醜家奴 與龍山別監李碩有憾 聞碩載內膳二艘泊于江 訴碩於醜 醜以告俊 遣夜別抄奪之 入其家 分與夜別抄 未幾 俊見王 王以碩上所膳狀示俊 俊變色退 還收以獻 王却之曰 旣奪而復獻 於義可乎 是皆寡人祭醮之須 碩久稽不進 見奪於俊 是碩罪也 流于島 遂以內侍權仁紀代之 尋召碩還 由是 王益惡俊”(『고려사』 권130 열전43 叛逆4 金俊傳).

36) “庚寅 洛浪君金璵邀王享于男山書齋 於是 宰樞僧徒 日進膳 爭極豪侈”(『고려사』 권33 세기33 충선왕 복위년 10월 경인).

하겠다.

바-2) 역시 고려후기에 사선이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바-2)는 임금의 탄신일에 중앙의 관사들이 제대로 진상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뒤에 벌어진 일이다. 김혼이 복위한 충선왕을 위해 사적으로 향연을 베풀자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당시 재추와 승려들은 앞 다투며 날마다 임금에게 進膳을 했다고 전한다. 새로 등극한 임금을 상대로 사선이 폭증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선은 임금에게 총행을 얻으려는 신료 측의 욕망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사실 고려의 임금들이 사선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다.

사-1) (鄭世裕가) 明宗 때 西北面兵馬使로 있으면서 民의 재물을 착취해 자주 內府에 바치자 왕이 그의 아들 鄭叔瞻 편에 手詔를 내리며 칭찬하였다. 정세유가 돌아와서 아들 鄭允當을 銓曹에 제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윤당이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다하여 吏部員外郎으로 제수하였다.³⁷⁾

사-2) 신축에 西北面兵馬使 李知命이 契丹絲 500束을 바쳤다. 이지명이 임지로 떠날 때 왕이 內殿으로 불러들여 친히 지시하기를, “義州는 비록 우리나라와 金 두 나라 사이의 互市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경은 龍州의 창고에 있는 紵布를 가져다가 거란사를 사서 바치도록 하라.” 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진상한 것이다. 毅宗 때 금이 실과 비단[絹] 등의 물품을 선물하면, 반은 內府에 들어서 왕이 사용하고 반은 大府에 들어서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모두 내부에 들어서 여러 폐행과 후궁들에게 주어버려서 대부에 저장된 것이 텅텅 비게 되었으므로 이렇게까지 거두어들이게 되었다.³⁸⁾

37) “明宗時 爲西北面兵馬使 斂民財貨 數獻內府 王遣其子叔瞻齎手詔獎諭 世裕還 請授其子允當銓曹 允當年少無知 乃授吏部員外郎”(『고려사』 권100 열전13 鄭世裕傳).

38) “辛丑 西北面兵馬使李知命獻契丹絲五百束 知命之陛辭也 王召入內殿 親諭曰 義州雖禁兩國互市 卿宜取龍州庫紵布 市丹絲以進 故有是獻 毅宗時 凡金國所贈絲絹等

사)는 신료들의 사선을 부추긴 명종에 대한 기사들이다. 사-1)에 따르면 당시 명종은 백성의 재화를 거두어 御府인 內府에 자주 진헌한 정세유를 벌주기는커녕, 手詔까지 내려 그의 '불법'을 독려했다. 사선을 금지해야 할 임금이 도리어 사선을 장려하고 부추긴 꼴이라고 하겠다. 임금의 독려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니면 본래부터 그럴 계획이었는지 정세유는 그 뒤 인사 청탁을 감행했다.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정세유의 진헌은 사심이 가득한 사선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사-2)에서 사선을 향한 명종의 행동이 더 과감해졌음을 볼 수 있다. 사선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지 명종은 재위 15년 1월에 이르러 지방 창고에 보관된 모시를 재원으로 거란과 무역하여 그 이익금을 내전에 들이도록 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핀 사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하나는 사선이 대개 重斂과 연계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사-1)에서 정세유는 「斂民財貨」하여 사선하였고, 앞에서 살핀 사료 가)에서는 당대의 관료들이 「重斂殘民」하여 私用했던 것이다. 重斂은 규정된 정액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었음을 뜻하므로, 이들 관료들이 중렴을 했다는 사실은 수취 과정에서 羨餘物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선여물이 결국 사선이나 私用の 재원으로 전용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사실은 사선을 부추기고 독려했던 명종의 동기이다. 명종이 사선을 부추긴 배경에는 왕실재정의 궁핍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2)에서는 재정의 虛渴이 “여러 폐행과 후궁들에게 많이 물건을 하사한 것”에서 비롯된 듯이 말했지만, 사실 무인정권 이래로 왕실재정은 여러 면에서 궁핍을 면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명종이 사선을 중용하였던 것이다.

物 半入內府 以需御用 半付大府 以充經費 王卽位以後 悉入內府 賜諸嬖倖 府藏虛渴 徵求至此”(『고려사』 권20 세기20 명종 15년 1월).

잘 알려져 있듯이, 무인정권을 기점으로 왕실의 재정은 급속도로 궁핍의 길로 들어섰다. 무인정권 이래로 왕실재정의 수지악화는 장기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어갔다. 우선, 무인들에 의한 궁원의 침탈로 장처전과 궁원전의 규모가 감축했다. 나아가 권세가에 의한 사전 겸병의 유행으로 왕실 수조지의 축소가 더욱 가속됨으로써, 급기야 임금들이 저녁을 굶거나 점심의 반찬을 줄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³⁹⁾ 그에 더하여 원간섭기에 이르러 盤纏 비용 등의 지출확대로 왕실의 재정은 만성적인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운용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국왕의 재정 운용권에 대한 제약이 가해짐으로써 마침내 왕실의 사재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⁴⁰⁾

왕실재정의 궁핍에 따른 사재정의 확대 경향은 진상제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후기 사선의 성행에 따른 진상제의 변모는 供上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 공상의 주요 재정원이었던 궁원전·장처전의 축소와 所體制의 붕괴로 고려후기에 공상이 부실화되자, 왕실은 사장고를 설치하여 일반군현의 공물을 분점해 나갔다.⁴¹⁾ 한편, 공상의 부실화는 자연히 외관 등에 의해 상납되던 진상이 왕실의 일상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고종 42년에 외방진상[外膳]의 미납에 따른 內藏의 허갈로 임금의 점심 반찬을 줄이게 되었다고 한다.⁴²⁾ 외선의 부족이 곧바로 임금의 점심에 영향을 줄 정도로

39) 『고려사』 권24 세기24 고종42년 9월 · 『고려사』 권27 세기27 원종 14년 2월 경자.

40) 왕실 사장고의 출현과 국왕의 재정운용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金載名, 「高麗後期王室財政의 二重의 構造 - 이른바 私藏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89, 2000을 참조 바란다.

41) 이정란, 2019, 「고려후기의 供上制와 왕실재정의 상관성에 대한 試論」 『한국중세사연구』 56, 121~130쪽.

42) “是月 外膳不繼 內藏告竭 王減晝膳 左倉別監尹平北人也 王再三召之 不至 越三日乃進 王怒甚 欲令執政奪其官 翻然嘆曰 今日 我雖奪之 明日 必復之 何懲之有 只命責之”(『고려사』 권24 세기24 고종42년 9월).

당시 왕실재정에서 진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왕실재정의 부실화는 常膳뿐만 아니라 別膳과 私膳에 대한 고려 왕실의 의존도를 높여, 고려 후기에 별선과 사선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아-1) <공민왕> 11년 6월 감찰사에서 상언하기를, “舊制에 外官은 例에 따라 朔膳을 바치는 것 외에 모두 別膳이 없었는데, 지금의 대소의 관리들이 별선이라고 이름하면서 민에게서 토산물[土宜]과 술, 고기 등의 물산을 거두어 권귀에게 보내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지금 부터는 청하건대 별선을 혁파하소서.”라고 하였다.⁴³⁾

아-2) 秋7월 신묘에 母后·公主 兩殿 및 皇后의 母 李氏를 위해 義城·德泉 兩倉이 供膳하게 하였다.⁴⁴⁾

아-1)은 공민왕 11년에 별선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는 감찰사의 상언이다. 그에 따르면 옛 제도에 매달 초하루에 진상하는 朔膳이 있었으나 別膳은 없었는데, 당시에 이르러 별선을 명목으로 권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관료들의 작폐가 크게 유행했다고 전한다. 본래 구제에 없던 別膳을 핑계로 작폐를 벌였던 사실로 보건대, 임금에게 별선을 올리는 일이 그에 앞서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충렬왕이 별선을 금지하는 금령을 반포한 사실을 적시한 가) 사료로 보건대, 별선은 충렬왕대 이미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선의 성행은 왕실 사재정의 강화 경향과 맞물리며, 진상을 담당하는 기구의 변화로 이어졌다. 고려 후기에 왕실의 私藏庫가 진상물을 수납·관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2)의 기록이다. 그에

43) “十一年六月 監察司上言 舊制 外官 例進朔膳外 無供別膳者 今大小官 名爲別膳 斂民土宜及酒肉等物 饋遺權貴 其弊莫甚 自今 請罷別膳”(『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職制).

44) “秋七月辛卯 母后公主兩殿及皇后母李氏 令義城德泉兩倉供膳”(『고려사』 권37 세가 37 충정왕 원년 7월 신묘).

따르면 충정왕 대에 왕실의 사장고인 의성·덕천창이 왕실의 供膳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백관지』에 우창이 “供上の 米廩을 담당하는 곳”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⁴⁵⁾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왕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공식적인 기관은 우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려 왕실은 우창과 함께 다양한 傳供衙門에서 공급하는 물화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갔었는데, 아)에 따르면 고려 후기에 이르러 왕실의 사장고도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장고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의식주 전반에 대한 물품 조달은 여전히 전공아문이 관장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왕실의 私庫인 사장고가 그러한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사실은 고려 후기에 그 만큼 사선이 많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선이 사재정의 유행과 맞물려 ‘관행화’되어 간 만큼 왕실의 私庫인 사장고가 供膳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추세였다고 하겠다.

결국, 왕실 수조지 축소에 따른 供上の 부실화, 盤纏 등의 지출확대에 따른 왕실재정 수지의 악화, 재정운용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국왕의 재정 운용권 약화와 맞물려 고려 후기에 사선이 크게 유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선의 성행은 진상의 변모를 보여주는 한편, 사장고의 출현과 함께 고려 후기에 왕실재정의 사적 성격 강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IV. 진상제와 선물경제의 상관성

이상에서 고려 후기에 사선이 성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사실, 고려 후기 이래로 私膳의 성행에 따른 진상제의 변모는 이후 선물경제의

45) “豐儲倉 掌供上米廩”(『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豐儲倉).

확산으로 이어진다. 전근대 사회에서 관료들 사이에 다양한 물건을 수수하였던 시스템인 선물체제는 사실 封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⁴⁶⁾ 아래의 자료를 보자.

자-1) (권단이) 東京留守로 있을 때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민으로부터 綾羅를 거두어[賦] 저장하는 곳으로 甲坊이라고 불렀다. 공헌으로 바치고도 남은 것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留守들이 사사로이 써 버렸다. 권단은 감방을 철폐하고 1년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3년간의 공납을 지불하였다. 司戶 중에서 백성들의 田租를 도적질하는 이가 있었는데, 마당에서 그 머리를 부수어 버려 보는 이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서워 벌벌 떨었다.⁴⁷⁾

자-2) 충렬왕 22년(1296) 5월 中贊 洪子藩이 便民의 일을 조목별로 올리기를, “(중략) 여러 州縣官과 사명을 받들고 나가는 員吏들은 모두 出身 衙門과 급제한 進士에게서 물건을 보내고는 封送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실오라기 하나 곡식 한 알이 백성의 살이요 백성의 기름이니 진실로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⁴⁸⁾

자-1)은 공물을 상납하고 남은 贏餘를 동경의 유수들이 사적으로 유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당시 동경유수들이 所私했다는 행위의 구

46) 변성아, 2013, 「고려말 李穡이 받은 선물의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 “留守東京 舊有一庫 賦綾羅貯之 名甲坊 充貢獻 贏餘甚多 皆爲留守所私 撤甲坊以一年所收 支三年貢 司戶有盜民租者 碎其腦于庭 觀者股栗”(『고려사』 권107 열전 20 權咀傳).

위의 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아래의 권단묘지명에도 있다.

“東京古有甲坊 名爲國稅之所出 其羨餘寔爲專城者所私 及公之留守也 卽破去 以一年之收支三年 又徵司戶之貪猾盜用租賦者 民到于今稱之”(『權咀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金龍善 編著,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3).

48) “二十二年五月 中贊洪子藩條上便民事 (중략) 一 諸州縣官出使員吏 皆於出身衙門及第進士 送納貨物 稱爲封送 一縷一粒 民膏民脂 誠宜禁之”(『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職制 忠烈왕 22년),

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앞 장에서 살펴본 권귀에게 密進하거나 私用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2)는 ‘封餘’의 물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주현의 관리나 使命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원리들이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자신이 재직했던 중앙의 관청이나 進士들에게 보냈다고 한다.⁴⁹⁾

고려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封送이라고 칭하면서 행했던 사실이 흥미롭다. 封送이 봉여와 연관이 있는 어휘로 보이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 봉여·선여는 중앙에 上供⁵⁰⁾하고 남은 물품으로, 대개 사적 은총을 구하기 위해 황제에게 진봉물로 바쳐지는 재원이었다. 그런 까닭에 宋의 사대부들은 선여를 대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⁵¹⁾ 그런데 고려와 조선에서 선여·봉여는 그리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조선에서도 봉여는 본래 “중앙에 봉진하고 남은 물품을 국왕이 관료들에게 回賜하는 것”⁵²⁾을 의미했지만, 임금에 의한 회사는 관념의 산물에 가까워 현실에서 봉여물들은 관원들끼리 직접 수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송에서 상공하고 남은 재물로 황제에게 상납되었던 봉여가 고려와 조선에서는 중앙의 관사가 관원에게 배분하거나 외관들이 지인들이나 경외의 관료들에게 나누어준 물품의 의미로 전용되었다.

고려와 조선에서 봉여는 임금의 回賜라는 형식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관료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수수되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무

49) 이 점에서 이색에게 선물을 준 증여자를 분석한 연구가 주목된다(변성아, 2013, 앞의 논문, 29쪽). 그에 따르면 이색은 가족·친인척, 지방관, 좌주·문생·동년 등 과거를 매개로 한 인물, 승려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50) 중국에서 上供은 당말에 三分의 재정체계의 성립과 함께 형성된 중앙정부의 財政源으로서, 당시 지방에서 중앙 국고에 납입한 재원을 의미한다(이정란, 2019, 앞의 논문, 103~107쪽 참조).

51) 吳妙嬋, 2016, 「宋代“羨余”問題研究」, 河北大學 歷史學碩士學位論文, 38~50쪽.

52) 李成妊, 1995, 「16세기 朝鮮 兩班官僚의 仕宦과 그에 따른 수입-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02~105쪽; 최주희, 앞의 논문, 37쪽.

엇일까? 필자는 그것이 治者意識의 발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치자로서 봉여물을 임금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사고는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士·農·工·商의 4신분 중에 농·공·상은 각자의 업을 대대로 이어받아 供上을 하지만 士만은 일을 하지 않고 학문의 길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자신을 수양하며 집안을 바르게 하고 임금을 섬기며 민을 다스리는 도를 모두 배운 뒤에 官에 나아가게 됩니다.”⁵³⁾고 말한 윤소종의 언급에서 우선 그러한 인식의 단면이 엿보인다. 윤소종은 공상의 임무를 농·공·상에게는 부여했으나 士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들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민으로부터 공물을 상납 받아야 하는 치자라는 인식을 은연 중에 반영한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위와 같은 치자들의 인식은 선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당시 지배층들은 物膳을 수동적으로 받는데 그치지 않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선물을 요구했다. 관련 사례는 이색이 받은 선물을 살핀 기존 연구⁵⁴⁾에 자세히 나오는데, 당시 이색은 필요한 물품을 꼭 집어 관료나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글을 다수 남겼다. 交州道按廉使 朴宜中에게는 고기·야생꿀[崖蜜]·野物을,⁵⁵⁾ 西海道按廉使 金震陽에게는 鹽州의 붕어[鮒魚]를,⁵⁶⁾ 廉興邦에게는 배를,⁵⁷⁾ 池鱗起에게는 야생꿀을,⁵⁸⁾ 二相인 李야무개에게는 붓[黃毛筆]을⁵⁹⁾ 보내줄 것을 요구했던

53) “自昔帝王分天下之民爲四等 曰士農工商 農工商各世其業 以供上 惟士無所事也 而入學讀書 修身正家事君治民之道 皆得學焉 而後官之 是以公卿大夫未有不盡其職 而人君代天之政成(『고려사』 권120 열전33 尹紹宗傳).

54) 변성아, 2013, 앞의 논문, 52~53쪽.

55) 『牧隱詩藁』 권30 寄交州廉使索肉·『牧隱詩藁』 권23 奉謝交州朴廉使<宜中> 會長送乾腊 因求崖蜜野物之惠.

56) 『牧隱詩藁』 권24 得西海按廉金震陽書 云送乾鹿 然鹽州鮒魚 又所欲者 因賦一首以寄.

57) 『牧隱詩藁』 권20 從東亭求梨.

58) 『牧隱詩藁』 권25 得門生平章安集池鱗起書 云送乾獐 因索崖蜜.

것이다. 자신의 요구가 얽치없는 일이라 여겼는지 이색은 몇 가지 침언을 붙여두었다. 즉, 고기는 노인 봉양과 제사음식으로 쓸 것인데 모두 작은 일이 아니지만 말 한 마리에 실어 보내 달라고 하거나⁶⁰⁾ “늙어 가매 식량이 더욱 심해지니[老來饑更甚] 口業은 참으로 버리기 어렵다[口業信難拋]”⁶¹⁾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때로는 물품을 보내준다는 편지를 받고 다른 물산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건어물[乾腊]을 보내겠다는 交州道按廉使 朴宜中の 글과 노루포[乾獐]를 보낸다는 지인기의 글을 받고는 崖蜜·野物도 아울러 보내줄 것을 청했다.⁶²⁾ 필요한 물품을 당당히 요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공물을 대하는 지배층들의 특권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지배층들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물품들은 대개 공물에서 남은 봉여물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당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선물이 봉여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숨기기는커녕 봉여였음을 대놓고 과시했다. 예를 들어, 이색은 전주의 兵馬使로부터 鹿脯를 받고 지은 시에 “進膳하고 남은 바를 老物에게 보내 주니(膳餘霑老物)”⁶³⁾라고 하여 자신이 받은 녹포가 선여였음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또 洪合浦로부터 글과 차를 받은 뒤에 이곡이 지은 시에는 “향기롭게 볶은 새로운 차를 上貢하고 남은 것으로 부쳐왔네(焙香新寄貢餘來)”⁶⁴⁾라는 내용이 버젓이 기술되어 있다. 친구나 동료들에게 받은 선물을 膳餘나 貢餘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봉여의 향유가

59) 『牧隱詩藁』 권28 從李二相索黃毛.

60) “養老須滋味 交神在脔肥 兩端俱不細 一騎望來歸”(『牧隱詩藁』 권30 寄交州廉使索肉).

61) 『牧隱詩藁』 권24 得西海按廉金震陽書 云送乾鹿 然鹽州鮑魚 又所欲者 因賦一首以寄.

62) 『牧隱詩藁』 권23 奉謝交州朴廉使<宜中> 會長送乾腊 因求崖蜜野物之惠·『목은시고』 권25 得門生平章安集池麟起書 云送乾獐 因索崖蜜.

63) 『牧隱詩藁』 권27 奉謝全州皇甫兵馬使送鹿脯.

64) 『稼亭集』 권15 율시 謝洪合浦寄橘茶.

치자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뇌리에 깊게 새겨있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했던 까닭에 당대의 지배층들 사이에 봉여물이 빈번히 수수되었다. 그로 인해 공물에서 봉여물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권단이 봉여의 폐단을 없애자 1년의 부세로 3년 치의 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한 자-1)의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궁중용 용기로 공납된 물량의 1/100만이 진상되고 나머지는 사용된다는 조준의 말에서도 그 정도의 심각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⁶⁵⁾

맺음말

조선에서 진상은 봉상하는 물품에 따라 物膳進上·方物進上·祭享進上·藥材進上·鷹子進上 등으로 나뉘는데, 고려에서도 이미 조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려의 자료에서 빈출하는 진상은 물선과 방물의 진상이다.

물선진상이란 말 그대로 임금과 그 일족들의 식생활 재료를 봉납한 진상을 의미하며, 『고려사』에 흔히 物膳·膳物·常膳·朔膳·月膳·別膳·私膳 등의 造語로 기술되어 있다. 상선이 정기적인 물선이라면 별선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상납하는 물선을 의미하며, 사선은 물선진상을 빙자하여 권귀들에게 사적으로 선물하는 행위를 이른다. 그 중 월선과 삭선이란 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도 물선의 진상이 매월 정규

65) “司饗 每歲遣人於諸道 監造內用甕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皆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又有羽筋箭竹等 差遣 擾民非一 願自今 各司愛民 差遣外方者 一切禁之”(『고려사』 권118 열전31 趙浚傳).

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선진상은 대개 해당 물품을 직접 중앙에 상납하는 체제로 이루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布帛 등으로 대납되기도 했는데,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물선 중의 하나는 야생동물의 진상이었다.

방물진상이란 각 지역의 특산물인 方物을 임금에게 봉상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節日·名節·祝日 등에 행하는 名日進上과 강무를 행할 때 올리는 講武進上 등이 있다. 고려조에서 명일진상은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명일진상의 상례화는 진상을 특별히 면제한 왕명의 존재, 명일에 진상과 함께 흔히 병행되던 上表의 의무화를 보여주는 다수의 사례 등에서도 유추되지만, 元正冬至節日朝賀儀에 進奉物을 배열하는 절차가 규정되었던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명일에 진상품의 상납은 필수적으로 거행되는 의례였던 것이다.

한편, 고려왕조는 임금에게 바치는 예헌적 선물이라는 진상의 본래적 함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에서 진상은 황제의 영역적 지배를 확인시키는 상징적 의례로서의 의미를 지녔는데, 고려의 진상에도 동일한 원리가 통용되었다. 우선, 元正冬至節日朝賀儀에는 지방에서 바친 진상물을 나열하고 物狀을 올리는 의례 등이 자세히 규정되었던 데 반해 중앙의 관료들이 예물을 바치는 절차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조하의에서 경관들은 다만 구두로 경하할 뿐이었는데, 이는 진상물의 상납이 임금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을 만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의례라는 사실을 충실히 반영한 조치였다. 또한 고려의 축일진상에 상납되는 물산은 비교적 소량이었는데, 이것 역시 의례성이 강하였을 뿐 실용적인 목적이 없었던 진상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조치였다. 이처럼 진상을 예헌적 예물로 인식했던 탓에 고려인들은 진상을 핑계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례적인 예물이었던 진봉이 당대에 이르러 사적인 선물로 변질되어 당·송대 황실재정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던 중국의 역사는 고려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사실 기원상 임금에게 헌납하는 공적 예물이었던 관계로, 진상은 처음부터 공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었다.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금으로부터 총행을 얻기 위해 사적으로 진상하는 사선이 고려후기에 크게 유행했다. 사선은 임금에게 총행을 얻으려는 신료 층의 욕망에서만 비롯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의 임금들이 사선을 부추긴 측면이 컸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왕실재정의 악화가 자리하였다. 고려 후기 왕실재정의 만성적 궁핍은 供上의 부실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사선·별선의 성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私膳의 성행에 따른 위와 같은 진상제의 사실상 확대는 곧 선물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전근대 사회에서 관료들 사이에 다양한 물건을 수수하였던 시스템인 선물체제는 사실 封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고려에서 조선조까지 크게 성행했다. 봉여를 수수하던 선물경제의 관행은 당대 지배층들이 지녔던 治者意識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자신들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민으로부터 공물을 상납 받아야 하는 치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당대 지배층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봉여를 관행적으로 수수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動安居士集』, 『牧隱詩藁』, 『稼亭集』, 『世宗實錄』

2. 논저

- 姜晉哲, 1980, 『高麗土地制度史研究』, 고려대 출판부
- 金載名, 2000, 「高麗後期 王室財政의 二重的 構造-이른바 私藏의 變化 過程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9
- 大隅清陽, 2011, 『律令官制と禮秩序の研究』, 吉川弘文館
- 大津透, 2006,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 岩波書店
- 渡邊信一郎, 2013, 「定額制の成立-唐代後半期における財務運營の轉換-」,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79
- 李成妊, 2005,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 梅原郁, 1971, 「宋代の内藏と左藏-君主獨裁制の財庫」, 『東洋學報』 42
- 변성아, 2013, 「고려말 李穡이 받은 선물의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왕실재정 개혁구상」, 『역사와담론』 65
- 吳妙嬋, 2016, 「宋代“羨余”問題研究」, 河北大學 歷史學碩士學位論文
- 李成妊, 1995, 「16세기 朝鮮 兩班官僚의 仕宦과 그에 따른 수입-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 李成妊, 2005,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 이정란, 2018, 「고려 전기 上表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제3회 전근대 왕권팀 학술발표회 발표문
- 이정란, 2019, 「고려후기의 供上制와 왕실재정의 상관성에 대한 試論」, 『한

국중세사연구』 56

전상욱, 2011, 「호서대동법 실시 전후 진상의 운영과 변화」, 『중앙사론』 34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中村裕一, 1971, 「唐代 內藏庫の變容-進奉を中心に-」, 『待兼山論叢』 4,
大阪大學文學部

清木場東, 1997, 『帝賜の構造-唐代財政史研究 支出編-』, 中國書店

최주희, 2012, 「15~16세기 別進上의 상납과 운영-강원·경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6

Abstract

Jinsang System in Goryeo and Gift Economy

Lee jung ran

In Joseon, jinsang(進上) was divided into mulseonjinsang(物膳進上), bangmuljinsang(方物進上), jehyangjinsang(祭享進上), depending on the type of offered goods, and a similar system is found in Goryeo too. Mulseon and bangmul are frequently mentioned in Goryeo documents related to jinsang. The former is an offering of food for king, and both regular sangseon(常膳) and irregular byeolseon(別膳) were offered. The latter is an offering of regional specialties for the king, and they are further divided into myeongiljinsang(名日進上) and gangmujinsang(講武進上). Many documents from Goryeo show that myeongiljinsang was practiced all the time.

In Goryeo, the essential meaning of jinsang—a ritual of presenting an offering to the king—was fully embraced. In China, jinsang served as a symbolic ritual of confirming the emperor’s territorial control, and the same applied to Goryeo. In Goryeo, only the procedure of sending regional specialties was defined in royal rituals, true to that offering of jinsang is essentially a symbolic ritual that shows people how far the king’s authority reaches. In Goryeo, only a small number of goods were offered as jinsang, also true to its fundamental ritualistic nature, without practical use.

However, in China, the symbolic meaning of jinsang was changed to private gifts by the time of Tang Dynasty, and this was followed in

Goryeo as well. Saseon(私膳), a personal offering to win the king's affection, became hugely popular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This did not solely stem from officials' desire. In fact, kings encouraged such offerings, driven by dwindling royal coffers.

As the practice of jinsang grew with popularity of saseon, gift economy expanded. In a pre-modern society, exchanges of various gifts among government officials are closely related to bongyeo(封餘), which is to share remaining offerings among officials, and this practice thrived from Goryeo to Joseon. The customs of taking bongyeo was established due to the ruling class' sense of entitlement. They felt that they were equally qualified as king to receive offerings from the people, and accordingly, liberally shared bongyeo amongst them without any qualm.

Keywords : Jinsang(進上; presenting the local tributes to the king), gift economy, mulseon(物膳), sangseon(常膳), byeolseon(別膳), saseon(私膳), myeongiljinsang(名日進上), johaeui(朝賀儀), sense of entitlement, bongyeo(封餘), offering-like gift

